



의무보고규정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09



CONTENTS

01. 도입 배경	1
02. 주요 권고사항	2
03. 국내 입법동향	3
04. 해외 입법동향	4
1. 의무보고규정 기도입 국가	4
2. 의무보고규정 입법 추진 국가	6
3. 요약	8
05. 요약 및 시사점	9
참고문헌	10

01 도입 배경

-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은 모든 과세관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주요 도전 중 하나이며,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면 과세당국은 세원잠식의 위험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¹⁾
- 이에 OECD는 Action 12에서 과세당국이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의무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 도입을 권고함²⁾
 - 많은 나라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과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이 국제조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 특히, 과세관할을 벗어나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Action 12 최종보고서는 의무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s)의 주요 정책 목표와 제도의 설계 원칙에 대한 지침 및 권고사항을 제시함
 - 의무보고규정은 ‘선택적 도입’ 사항이며 BEPS 참여국이 이행의무를 지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지는 않음
 - 현재 영국 등 의무보고제도를 시행중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권고함

1) OECD, *Mandatory Disclosure Rules, Action 12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p.9.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IV):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2015.12.7.

02 주요 권고사항³⁾

- 의무보고규정은 잠재적인 공격적 또는 남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러한 조세행위에 대해 보고의무를 지움으로써 공격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억제(deter)하는 데 그 정책적 목표가 있음

- 의무보고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신고대상자, 신고대상 정보, 신고시기,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Action 12 최종보고서는 의무보고규정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 납세자와 조장자(promoter, 조세자문가 등) 모두에게 보고의무를 지우거나, 납세자와 조장자 중 한쪽에 주된 보고의무를 부과함
 - 일반 특징분류기준(generic hallmarks)과 특정 특징분류기준(specific hallmarks)을 병행하여 의무보고 대상 거래나 계약을 설정함
 - 일반 특징분류기준은 조세자문 또는 거래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또는 할증수수료와 같이 조세회피전략의 일반적 특징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을 설정함
 - 특정 특징분류기준은 납세자의 지속적인 세무상 손실 등과 같은 특정한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을 설정함
 - 조세전략의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 역시 의무보고규정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므로, 신고된 조세전략과 의무보고를 수행한 조장자나 사용자를 연계하는 장치가 필요함
 - 주로 조장자에게 보고의무를 지우는 나라의 경우, 조세전략에 대한 식별번호를 도입하거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고객 명단을 제공하도록 함
 - 전략에 대한 보고의무가 조장자에게 있는 경우 의무보고 시기와 납세자가 그 조세전략을 활용가능한 시기를 연계하고, 그러한 보고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의무보고 시기와 실제 시행 시기를 연계함
 - 의무보고규정의 준수 강화를 위하여 처벌규정(비금전적 처벌 포함) 도입

3) OECD(2015), Action 12. pp. 9~11.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03 국내 입법동향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보고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BEPS 관련 대응조치의 이행효과를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⁴⁾
 - 의무보고규정이 도입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관련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행위에 이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세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BEPS 대응조치 중 국가별보고서(Action 13) 도입이 최소기준 과제로서 국내 입법이 진행 중이므로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 및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입법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검토 중임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Ⅳ):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2015.12.7.

04 해외 입법동향

- Action 12의 이행은 이미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영국 등의 일부 국가 외에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 관련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등 6개국이 있음
 - 이스라엘과 멕시코는 의무보고규정을 최근 입법하였으며, 호주, 프랑스, 브라질 등 소수 국가에서만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확인됨

1 의무보고규정 기도입 국가

- 기존에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한 국가로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이 있으며, 국가별로 보고의무자, 신고대상 거래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함⁵⁾
 - 미국은 1984년 최초 도입 후 2004년 개정함
 - 캐나다는 1989년 최초 도입 후 2013년에 보다 포괄적으로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를 신고하도록 개정함
 - 영국은 2004년 도입 후 2006년과 2011년 중요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짐
 - 포르투갈은 2008년, 아일랜드는 2011년 관련 규정을 도입함

5) OECD(2015), Action 12, pp.24~2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표 1 Action 12 의무보고규정 도입 국가의 제도 비교

	영국	미국	아일랜드
범 위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소득세(개인/법인), 상속 및 증여세, 기타 연방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의무보고 대상자	조장자 (사용자)	주요 조세자문가 납세자	조장자 (사용자)
의무보고 대상 거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 ① 아래의 특징분류기준에 해당할 것 ②주요 목적 테스트: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제공 받는 것일 것 - 일반 특징분류기준: (1)비밀보장거래 (2)할증 수수료 (3)표준 세무상품 - 특정 특징분류기준: 손실예상, 임대, 성과보수 등과 같은 위험성 있는 전략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①국세청이 고시한 거래 ②비밀보장 거래 ③보호 계약 거래 ④손실 거래 ⑤관심 대상 거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 ①아래의 특징분류기준에 해당할 것 ②주요 목적 테스트: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제공 받는 것일 것 - 일반 특징분류기준: (1)비밀보장거래 (2)할증 수수료 (3)표준 세무상품 - 특정 특징분류기준: 손실예상, 성과보수와 같은 위험성 있는 전략
	포르투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범 위	소득세(개인/법인), 부가가치세 등	소득세(개인/법인)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의무보고 대상자	조장자 (사용자)	조장자	조장자 (사용자)
의무보고 대상 거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 ①다음의 특징분류기준 (hallmark)에 해당할 것 ②주요 목적 테스트: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제공 받는 것일 것 - 일반 특징분류기준: 조장자의 제한 조항 - 특정 특징분류기준: (1)조세면제혜택을 받는 기업이 참여하는 거래 (2)소득의 재분류를 야기하는 금융거래 (3)세무상의 손실을 사용하는 거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 ①다음의 특징분류기준 (hallmark)에 해당할 것 ②주요 목적 테스트: 거래의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제공 받는 것일 것 - 특징분류기준: (1)할증 수수료 (2)기밀유지조항 (3)보호계약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 ①구체적으로 정의된 범주에 속할 것 ②특징분류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으로 정의된 범주 (1)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혼성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거래 (2)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부채로 분류될 거래 (3)공시에 기재된 거래 - 특징분류기준: 세금혜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자, 수수료 등

자료: OECD(2015), Action 12, Annex E,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호주) 호주 정부는 2016년 5월 3일 Action 12에 따른 의무보고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문서⁶⁾를 발표함⁷⁾

- 본 협의문서는 Action 12의 권고사항과 그에 대한 정부의 현재 견해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질의를 포함함
- 의무보고규정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현재 발표되지 않음

■ (프랑스) 프랑스 국회는 2013년 12월 19일 의무보고규정을 포함한 2014년 예산안을 의결⁸⁾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9일 의무보고규정을 기각함⁹⁾

- 의무보고규정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중대한 벌과금을 야기할 수 있는 데 반해 ‘조세전략(tax planning scheme)’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법을 반대함
- 다만, 프랑스 국회가 2016년 중 의무보고규정 입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존재함¹⁰⁾

■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회는 2015년 11월 30일 의무보고규정을 입법함¹¹⁾

- 이스라엘의 의무보고규정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등과 관련하여 2016년 이후 받은 “조세자문(tax advice)”과 납세자의 “보고대상 조세 결정사항(reportable tax position)”을 연말 세무신고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함
 - 보고대상 조세자문: 자문료가 10만 이스라엘세겔(약 2.6만 미달러) 이상인 일반적

6) 호주 재무부, (http://www.treasury.gov.au/~media/Treasury/Consultations%20and%20Reviews/Consultations/2016/OECD%20Proposals%20for%20Mandatory%20Disclosure%20of%20Tax%20Information/Key%20Documents/PDF/OECD_proposals_mandatory_tax_disclosure.ashx)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7) 호주 재무부, (<http://www.treasury.gov.au/ConsultationsandReviews/Consultations/2016/OECD-Proposals-for-Mandatory-Disclosure-of-Tax-Information>)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8) EY, Global Tax Alert,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France-s-Parliament-approves-2014-Finance-Bill-and-Amended-2013-Finance-Bill>)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9) EY, Global Tax Alert,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French-Finance-Bills-finally-enacted-but-certain-provisions-censored-by-the-Constitutional-Court>)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0) Deloitte, BEPS Actions implementation by country - France, February 2016,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beps-actions-implementation-france.pdf>)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1) Israel - Reporting obligation on tax opinions introduced (22 Dec. 2015), News IBFD, (http://online.ibfd.org/document/tns_2015-12-22_il_1)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조세자문(고객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닌 다른 납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자문)으로 자문을 받는 고객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문

- 보고대상 조세결정사항: 이스라엘 과세관청이 발표하는 세법해설에 부합하지 않은 세무처리나 결정으로 인한 조세혜택이 특정 연도에 500만 이스라엘세겔(약 1.3백만 미달러) 이상 또는 4개년 합산 1천만 이스라엘세겔(약 2.5백만 미달러) 이상인 경우

■ (멕시코) 멕시코 과세당국은 2014년 10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의무보고규정 관련 보고대상 거래 목록을 발표함¹²⁾

- 멕시코의 의무보고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이미 발생한 “주요 거래(transaction)”에 대하여 거래 발생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대상 주요 거래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금융거래
 - 이전가격거래
 - 자본거래와 거주지 이전
 - 조직구조 변경
 - 기타 관련 거래

■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2015년 7월 22일 의무보고규정 도입을 발표하였으나¹³⁾ 201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입법되지 못함¹⁴⁾

- 브라질 정부가 제시한 의무규정은 조세회피, 조세경감 또는 과세이연을 야기하는 조세전략을 연말 세무신고서와 함께 조세전략신고서(Tax Planning Declaration)에 보고하도록 함
- 보고된 조세전략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에 대한 이자만을 납부하도록 하여 의무보고 준수를 유도함
 - 브라질 과세관청이 미신고된 조세전략을 발견하는 경우 과소납부에 대해 최대 150%의 가산세를 부과함
- 의무보고규정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¹⁵⁾

12) EY, Global Tax Alert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Mexican-Tax-Authorities-is-sue-requirements-for-monthly-reporting-of-transactions-for-2014>)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3) EY, Global Tax Alert.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Brazil-uses-tax-losses-to-encourage-companies-to-settle-disputed-tax-liabilities-while-also-introducing-new-disclosure-requirement>)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4) EY, Global Tax Alert.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Brazilian-Congress-rejects-tax-planning-disclosure-requirements>) (접속일자: 2016.09.13.),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3 요약

표 2 주요국의 Action 12 이행현황

국가	이행현황
호주	논의 중
캐나다	기존재
프랑스	논의 중
아일랜드	기존재
이스라엘	2015년 입법 완료
멕시코	2014년 입법 완료
포르투갈	기존재
영국	기존재
미국	기존재
브라질	논의 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공화국	기존재

자료: OECD, Action 12; 각국의 재무부; IBFD; Deloitte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상세 자료 출처는 위 본문의 각 국에 대한 각주 참조).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5) Deloitte, BEPS Actions implementation by country - Brazil, February 2016.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beps-actions-implementation-brazil.pdf>) (접속일자 2016.08.10.),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05 요약 및 시사점

- Action 12는 선택적 도입사항으로 의무보고규정의 주요 정책 목표와 제도의 설계 원칙에 대한 지침 및 권고사항을 제시함
 - 의무보고규정은 잠재적인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러한 조세행위에 대해 보고의무를 지움으로써 공격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은 모든 과세관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주요 도전 중 하나이며,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세원잠식의 위험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보고규정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입법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검토 중임
 - BEPS 대응조치 중 국가별보고서(Action 13) 도입이 최소기준 과제로서 국내 입법이 진행 중이므로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 기존에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한 국가로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멕시코에서 입법됨
 - 이 외에 호주, 프랑스, 브라질 등 소수 국가에서만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확인됨

- 의무보고규정은 선택적 도입사항으로 2016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국가별보고서 등 최소기준 이행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은 각국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의무보고규정은 다국적기업의 조세 투명성 제고와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사전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하여 조기에 필요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음

참 · 고 · 문 · 헌

기재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IV):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2015.12.7.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Israel - Reporting obligation on tax opinions introduced (22 Dec. 2015), News IBFD.
OECD, *Mandatory Disclosure Rules, Action 12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기획재정부, www.mos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ww.kipf.re.kr

호주 재무부, www.treasury.gov.au

OECD, www.oecd.org

KPMG, www.kpmg.com

EY, www.ey.com

Deiloitte, www.deloitte.com

PwC, www.pwc.com

IBFD, www.ibfd.org

의무보고규정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